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5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영진·허 영·임광현

임호선 · 강유정 · 김영환

서삼석 • 조승래 • 박지원

소병훈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어민 등의 실질소 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 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u>202</u>	<u>202</u>
<u>5년 12월 31일</u> 까지 받는 배당	<u>8년 12월 31일</u>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2.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지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u>12월 31일</u>
2. <u>2030년 1월 1일</u>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u>2028년</u>
<u>12월 31일2</u>
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 월 31일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30년 1월 1일
·